제 7 장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위원회

신설 2011년 9월 5일
개정 2012년 11월 27일
개정 2013년 7월 29일

제21조(설치) 의과대학은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위원회를 둔다.

제22조(구성)

1.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위원회는 위원장, 교원, 직원, 학생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1/2은 여성위원으로 한다.
2.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으로 한다.
3. 당연직위원은 교무부학장, 학생부학장, 교목으로 하며,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, 직원, 재학생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23조(기능)

1.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,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.
2.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조사·중재한다.
3.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한다.
4.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처리결과를 공고한다.
5.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.
6.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